

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

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저당권설정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체결된 아래와 같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기재 한 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○번의 저당권을 설정한다.

제2조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채무금액 : 금 ○○○원

2. 변제기한 : 20○○년 ○월 ○일

3. 변제방법 : 일시불

4. 이 율: 00%

5. 이자지급 및 방법 : 매월 말일, 통장입금

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 로부터 가압류,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또는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 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.

제4조 저당 물건의 증축, 개축, 수리,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
제5조 이 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한다.

제6조 본 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인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.

부동산의 표시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○○○평방미터.

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.

2000년 0월 0일

채권자	주	소					www.klac.or.kr#.to	비한법로구조공단
겸 저당권자	성	명	인	주민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> 6465	
채	주	소						
무 자	성	玛	인	주민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	
저당권 . 설정자	주	소						
	성	配	인	주민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	